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 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 고발

무속인 말 듣고 장관 지시 무시한 채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지시 의혹

-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증거인멸 염려 상당해 신속한 강제수사 촉구
- 법무부장관 지시 불구 자신의 영달 위해 정부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 ... 직권남용·직무유기
- 수사상황 누설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죄·무속인 전씨의 관계 부인한 허위사실공포 혐의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를 저지한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 후보는 2021.12.14.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작년 2월 검찰총장 시절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제가 불가하다고 했다” 라고 시인한 바 있다.

이어서 윤 후보는 ‘불가’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을 위한 지시를 어긴 경우이고,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된다”며,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22.1.17. 세계일보는 “[단독] “윤석열 일정·메시지 뒤집기도... 캠프 업무 전반 관여 의혹”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무속인 전모 씨의 지인은 전씨가 ‘윤 검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 있었다’ 며, 전씨가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 고 조인한 사실을 언급했다” 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고발인은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신천지에 대

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반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단되는 바,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담당 공무원의 신천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방역 저해 행위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 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종교인인 이만희와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는 판단 하에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도 적시했다.

이어서 윤 후보가 무속인 전씨에게 신천지에 대한 수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 ‘현재 이만희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신천지 압수수색 및 이만희 신병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실’ 등을 누설한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 요건에도 해당한다” 고 덧붙였다.

또 무속인 전씨의 국민의힘 선대본 활동 여부와 윤 후보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윤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인사한 것” 이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인사만 했을 뿐 특별한 관계는 없다” 고 한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공포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피고발인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 거부로 인해 정부의 방역 활동이 방해되었고, 폐쇄성이 짙은 신천지 교리 특성상 정부에서 교인과 시설 명단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불가능하여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게 되었다” 며, “총장으로서 무속인에게 의지해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대통령선거라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은 것과 다름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세계일보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다” 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우니 부득이하게 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가 건진법사(전모 씨)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는지, 또한 건진법사가 피고발인과 가까운 사이로서 실제 선대본에서 활동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계일보 담당 기자, 전모 씨, 전모 씨의 지인 등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피고발인은 수사의 전문가이고 전모 씨도 피고발인의 최측근으로서 피고발인으로부터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658106>

본 건 수사에 대한 여러 조언을 받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상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통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현안대응TF 공동단장, 조오섭 대변인, 지원단 소속 이창훈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에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